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 확대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1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 확대 및 설치 비용 지원	2
2.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료에 반영	8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4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약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는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워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에의 대응 등 세밀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Ⅲ. 검토의견

1.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 확대 및 설치 비용 지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 중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를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안 제52조제1항),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신설>	1. <u>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u> <u>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u>
<신설>	2. <u>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u> <u>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u>
<신설>	3. <u>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u> <u>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u>

② ~ ⑤ (생 략) <u><신 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

현행법¹⁾에서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서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하천수 사용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 하천수를 취수하려는 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유량계)을 설치하고, 하천수의 사용 날짜, 사용량 등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 1)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표] 계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수 사용자 기준

「하천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u>공업용수</u> 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u>생활용수</u> 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u>농업용수</u> 를 취수하는 자	

그런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전체 사용시설 중 계측시설 설치현황('24. 12월 기준)을 보면, 총 14,466개소 중 현행법에 따른 계측시설 설치는 626개소(4.3%), 계측시설 미설치는 13,840개소(95.7%)이고,

[표] 하천수 사용 시설(전체) 중 계측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계측시설 설치		계측시설 미설치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합계	14,466	100.0	626	4.3	13,840	95.7
생활	435	3.0	137	31.5	298	68.5
공업	631	4.4	214	33.9	417	66.1
농업	13,400	92.6	275	2.1	13,125	97.9

특히, 전체 하천수 사용 개소수의 92.6%, 하천수 사용 허가량의 83.2%를 차지하는 농업용수³⁾의 경우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

3) 2024. 12월 기준, 하천수 허가량 138,763(천m³/일) 중 농업용수 허가량은 115,439(천m³/일)으로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83.2%를 차지

[하천수 허가 현황('24.12월 기준)]

(단위 : 개소, 천m³/일)

구분	전체				보고 대상			
	개소수	비율(%)	허가량	비율(%)	개소수	비율(%)	허가량	비율(%)
합계	14,466	100.0	138,763	100.0	1,974	13.6	121,281	87.4
생활	435	3.0	17,536	12.6	150	34.5	17,244	98.3
공업	631	4.4	5,788	4.2	238	37.7	5,728	99.0
농업	13,400	92.6	115,439	83.2	1,586	11.8	98,309	85.2

수를 취수하는 자에 대해서만 계측시설 설치 및 사용량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전체 13,400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275개소에만 계측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계측시설 설치 의무시설 현황('24. 12월 기준)을 보면, 전체 1,974개소 중에도 402개소(20.4%)에만 현행법령에 따라 유량계를 포함한 계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1,572개소(79.6%)는 계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위-유량 관계식, 펌프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등으로 하천수 사용량을 추정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계측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⁴⁾.

[표] 계측시설 설치 의무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의무시설)		계측시설 설치		계측시설 미설치*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합계	1,974	100.0	402	20.4	1,572	79.6
생활	150	7.6	85	56.7	65	43.3
공업	238	12.1	139	58.4	99	41.6
농업	1,586	80.3	178	11.2	1,408	88.8

* 계측시설 미설치 사용자는 수위-유량 관계식, 펌프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등으로 하천수 사용량을 산정하여 실적 보고

이에 개정안은 ①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 중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를 확대(사용량, 8천 세제곱미터/1일 ▶ 5천 세제곱미터/1일)하여 생활·공업용수 설치 대상자와

4) 계측시설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력사용량 자료 등을 통해 시험유역 운영을 통한 계측자료는 검증 측정 결과와 10% 이내의 오차 발생. 소규모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실시간 하천수사용량 수집체계 개선 연구, 한강홍수통제소, 2024. 11)

함께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우, 전체 개소수(13,400개소) 대비 11.8%(1,586개소)에 불과한 계측시설 설치 의무시설을 18%(2,416개소)로 그 대상을 확대⁵⁾하고, 계측시설 의무설치 대상이나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인 시설에 설치를 유도하여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측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갈수위험 등에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 관련하여서는 현재 설치 의무 대상 시설(1,974개소) 중 79.6%에 해당하는 1,572개 시설에서 현행법령에 따른 계측시설 대신 수위-유량 관계식, 펌프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등을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측정·통보하고 있다는 점과

5) [하천수 허가규모별 현황, '24. 12. 기준]

(단위 : 개소, 천m³/일)

구분		합계	<500	500≤	1,000≤	5,000≤	8,000≤
합계	건수	14,466	4,954	9,512	6,920	2,671	1,769
	(%)	100	34.2	65.8	47.8	18.5	12.2
	허가량	138,763	916	137,847	136,091	126,202	120,528
	(%)	100	0.7	99.3	98.1	90.9	86.9
생활	건수	435	128	307	245	150	117
	(%)	100	29.4	70.6	56.3	34.5	26.9
	허가량	17,536	21	17,514	17,471	17,244	17,038
	(%)	100	0.1	99.9	99.6	98.3	97.2
공업	건수	631	343	288	238	105	66
	(%)	100	54.4	45.6	37.7	16.6	10.5
	허가량	5,788	24	5,764	5,728	5,413	5,181
	(%)	100	0.4	99.6	99.0	93.5	89.5
농업	건수	13,400	4,483	8,917	6,437	2,416	1,586
	(%)	100	33.5	66.5	48.0	18.0	11.8
	허가량	115,439	870	114,568	112,892	103,545	98,309
	(%)	100	0.8	99.2	97.8	89.7	85.2

대기환경보전법⁶⁾ 등 유사입법례에서 측정이 필요한 설치 시설을 세분화하고, 특정 시설에는 전력사용량(적산전력계) 등의 측정값을 계측 시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천수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별 특성 및 실측자료의 신뢰도에 따라 설치 시설을 세분화하고, 소규모 시설, 실측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시설 등은 전력사용량 등의 측정방법으로 하천수 사용량을 측정·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⁷⁾⁸⁾,

측정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 시설 등 유량계가 포함된 계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현재 1,572개 시설이 계측시설 없이 전력사용량 등으로 하천수 사용량을 추정하여 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허용 조향도 제제 조향도 없는 입법공백 상태임.

8)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실시간 하천수 사용량 수집체계 개선방안 연구’(한강홍수통제소, ‘23~’25)를 통해 계측기 없이 전력사용량 또는 수위계 등으로 추정한 사용량과 계측기를 설치한 사용량을 비교 검증하여 정확도 파악 진행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해 하천수 사용량 계측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2.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료에 반영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2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한다.</u>

현행법⁹⁾은 시·도지사가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허가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경우 실제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9) 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보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나,

농업용수, 발전용수는 단위당 요금만 제시되어 있어, 1984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사용료 단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¹¹⁾.

[표]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¹²⁾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m ³)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 ³)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m ³)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11) 물관리제도 및 하천수입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371P, 환경부, 2021

1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 제18조(생·공용수 요금단가) ① 생·공용수의 요금(이하 이장에서는 "요금"이라 함)은 단가는 「댐용수요금산정규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단가로 합니다.

[표] 하천수의 용도별 사용료 단가 추이

년도	농업용수	발전용수	수열에너지 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댐용수					
1974	0.00032원	-		0.0076원	-	댐별					
1981		0.0032원		환경구분 (0.01원/㎥)	-						
1984		0.0063원			-						
1986	0.00063원				-						
1987					-	5.94원					
1988					-	5.94원					
1989					-	5.94원					
1990					-	5.94원					
1991					-	5.94원					
1992					-	7.13원					
1993					-	7.13원					
1994					-	7.13원					
1995	0.0063원	0.0063원		댐원수대 (한국수자원 공사법)	-	8.23원					
1996					-	9.50원					
1997					-	11.98원					
1998					-	16.36원					
1999					-	22.93원					
2000					-	25.54원					
2001					-	30.35원					
2002					-	35.12원					
2004					-	41.70원					
2005					-	47.93원					
2007					-	47.93원					
2008	댐원수대 (하천법)	댐원수대 (하천법)		47.93원							
2013				50.30원							
2016				52.70원							
2021	0.0063원										

자료: 환경부

* ‘수열에너지용수’는 2021년 요금 신설(기존에는 생공용수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열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발전용수에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하게 낮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전기요금, 전파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은 주기적으로 요금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하천수 사용료의 조정도 국민생활, 산업경제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정한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의2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